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2
----------	-----

제출년월일 : 202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문화 시설을 시설별 목적 및 규모, 설치지역과 이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정비 (안 제1조~제2조)

다. 시설별 운영 규칙 별도 마련에 대한 내용 신설 (안 제7조)

- 놀이문화시설 운영사항을 시설의 목적 및 규모, 설치지역과 이용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이용료 등에 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 (안 제8조)

- 군민 우대 및 회원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2.8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 16.~2025.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96호, 가족복지과-2553(2025. 1. 16.)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961(2025. 2. 3.)호]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1961(2025. 2. 3.)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274(2025. 1. 15.)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802(2025. 2. 18.)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4300(2025. 3. 17.)호]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문화시설”이란 어린이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놀이문화시설 조성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놀이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놀이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연령별 성장·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놀이기구 제공
3.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놀이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문화시설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은 시설의 목적, 설치지역 및 이용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놀이문화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놀이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세입 : 놀이문화시설 이용료 또는 연회비 징수
- 세출 : 놀이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나. 관련조문 : 제8조(이용료 등), 제13조(운영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실내놀이터 2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 위탁 운영
- 실내놀이터 무료 운영,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징수 (※세외수입 처리)

나. 추계 결과(연간)

○ 세입

구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인원산출 기준)
계			7,190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개인	20,000원×317명	6,340	영유아 인구의 50%
	단체	50,000원×17개소	850	어린이집 및 유치원 70%

※ 연회비 확정 및 감면 규정은 별도로 정함

○ 세출

구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
계			385,000	
어린이 실내놀이터	평창	인건비(6명) 및 운영비	166,000	정규 3, 기간제 3
	진부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14,000	정규 3, 기간제 1
장난감도서관		인건비(3명) 및 운영비	105,000	정규 2, 기간제 1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일부 의존재원(교육발전특구예산) 활용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4,800	7,190	7,500	7,500	7,500	34,490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4,800	7,190	7,500	7,500	7,500	34,490	
세 출	350,000	400,000	421,000	452,000	475,000	2,098,000	
실내놀이터 위탁금	280,000	295,000	310,000	335,000	352,000	1,572,000	
장난감도서관 위탁금	70,000	105,000	111,000	117,000	123,000	526,000	
재원 조달	350,000	400,000	421,000	452,000	475,000	2,098,000	
의존 재원	소 계	70,000	105,000			175,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70,000	105,000			175,000	
자체 수입	소 계	280,000	295,000	421,000	452,000	475,000	1,923,000
	지방세(군비)	280,000	295,000	421,000	452,000	475,000	1,923,0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 정 은
연락처	(033) 330 - 2124